

新電氣事業法の 制定意義

昔 成 煥

<韓電, 法令整備擔當役>

I. 新法制定의 必要性

1. 現行 電氣事業法の 成立과 그 背景

現行 電氣事業法은 1961年 12月 30日에 制定되었다. 그러나 그 沿革을 살펴보면 1930年代로 溯及된다.

韓國에 電氣事業이 始作된것은 1887年 宮廷에 外國人이 電燈을 點燈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하거나 여기에 對한 法規制는 日帝侵略이 있은 以後의 일이었다.

특히 1920年代에 이르러 內燃機關의 發達로 因하여 國內 各處에 電燈需要를 主된 對象으로 하는 小規模 配電事業이 亂立하여 全國의 電氣事業者는, 1930年代에는, 무려 50餘를 헤아리게 되었다.

따라서 日帝當局은 (1931年 本土에서 電氣事業法을 改正 施行함에 있어서) 1932年에 所謂 總督府 制令

으로서 「朝鮮 電氣事業令」을 制定하여 이 땅에 비로소 本格的인 電氣事業 規制法規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後로 各種 法令이 나타났으나 이들은 解放과 더불어 霧散되고 말았다.

다만 美軍政法令 第21號 「法律, 諸命令의 存續에 關한 件」 및 南朝鮮 過渡政府行政命令인 「非常時 電力委員會 設置에 關한 件」에 依하여 日帝의 法令이 當分間 그대로 適用되었고 政府樹立後에는 獨立憲法 第100條에 依하여 이들이 合憲的인 實定法源으로 存續케 되었다.

5.16 卽後 政府는 祖國의 近世 政治史에 있어서 風運의 所産이라 할 수 있는 이들 各種 外國法令들에 對한 大대의인 整備作業을 시들러 遂行하는 가운데 現行 電氣事業法도 다른 幾百의 諸法令과 함께, 1961. 12.30 當時의 立法機關인 國家再建 最高會議를 通過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當時의 狀況으로서는 舊法을 大體的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程度의 時間除餘밖에 없었으므로

첫째, 그 몇달前에 制定된 韓電法에 依하여 電力三社가 統合된 卽後에서 多數 電氣事業者의 出現을 豫期치 못한 關係로 國家調整關係 條項을 事實上 모두 削除하였고,

둘째, 電氣 技術에 關하여는 當時 隣近 外國에서 施行되던 制法을 吸收하여 「電氣工作物 規程」을 定한것 등을 除外하고는 事實上 舊朝鮮 電氣事業令의 體制가 그대로 繼承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現行법의 立法趣旨은 1930年代 電氣事業 初創期에 電氣技術의 研究開發이 初步段階에 不過하여 電氣工作物의 規制方法等 極히 未備된 內容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2. 電氣事業法 全面改正의 必要性

지만 半世紀에 있어서의 技術의 發達은 어느 數世紀에 맞먹는 바 있다.

電氣事業分野에 있어서도 研究, 開發과 技術革新이 눈부신 바 있어

오늘날에는 電氣는 單純히 點燈의 手段이 아니라 모든 産業의 動力源인 同時에 一般市民生活의 必須品化되어 있어 現代 物質文明의 中樞的인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더우기 1960年代 以後 産業活動이 活潑하게 됨에 따라 國民生活이 向上되고 電力需要가 急激히 上昇되어 國內 發電設備가 400萬kw로 急増하였으며 그 동안 電氣事業者는 3個→1個→4個→3個로 되는 등 電氣事業界는 많은 起伏을 겪었다. 한편 農漁村電化事業의 促進 등으로 1977年頃에는 全國土가 完全電化地域으로 化하게 되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現行法을 그대로 適用하기에는 너무나 不備 矛盾點이 많으므로 改正이 時急하였으나 部分改正만으로는 도저히 그 乖離를 메꾸기에 未及하기 때문에 此際에 新法制定으로서 電氣事業界에 一新을 期하러 한 것이다. 이러한 果年の 努力에도 不拘하고 作業이 推進되지 못하던中 지난 1月 30日 新法案이 非常國務會議을 通過하므로써 드디어 年來의 宿願이 풀린 셈이다. 이 新法은 施行에 必要한 附屬法令들이 制定되는 데로 施行하게 되는데(施行日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同法附則 第1項) 以下 그 重要改正內容을 簡略히 記述한다.

II. 重要 改正事項

1. 國家의 規制와 調整機能 強化

國家가 規制와 調整을 必要로 하는 事項은 모두 法律에 定하였다.

예를 들면 數個의 電氣事業者가 設立된 結果 그들 相互間의 供給秩序를 確立하는 것(法第13條), 綜合

的인 電力需給計劃과 長期設備投資計劃을 樹立하여 恒常 適正規模의 電力供給 設備가 確保되고 圓滑한 電力需給에 支障이 없도록 하고(法第24條), 電力不足時를 對備하여 國家가 直接 電氣使用者에 對하여 電力使用을 制限하고, 電氣事業者에게 電氣供給을 調節할 것을 規定하였다(法第21條), 그뿐만 아니라 非常災害 其他 緊急事態로 因하여 電力需給에 莫大한 支障이 招來케 된 경우에는 國家가 모든 電氣工作物 所有者에게 相互 協助하여 難局을 打開하도록 命을 할 수 있도록 하고(法第25條), 高度의 公益事業인 電氣事業의 健全한 運營을 促求하고 또 電氣行政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國家는 모든 電氣事業者를 監査할 수 있도록 하고, 必要한 報告書를 提出케 하였다(法第72條, 第73條)

2. 電力審議委員會 設置

電氣行政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하고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商工부에 電力審議委員會를 두어 新規電氣事業許可審議와 電力料金 水準에 關한 意見을 綜合하고(特定電氣事業者의 電力料金에 關하여는 審議機關으로 된다. 法第15條 第2項, 法第18條 第3項) 長期 電氣供給計劃 및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의 長期 投資計劃을 審議決定하는 機關으로 하였다(任務,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는 施行令에서 定한다)

3. 電氣事業의 合理的인 區分과 規制

電氣事業을 一般電氣事業과 特定電氣事業으로 單純化하고 從來 認定되던 準用事業制度는 廢止하였다.

(勿論 準用事業이란 用語가 使用되기는 하지만 後述하는 바와같이 全く 그 概念이 다르다) 兩者의 差異는 供給相對方의 누구인가에 따라 區分되는 것으로서 一般的인 需要에 應하는 事業을 一般電氣事業, 特定人(即 一般電氣事業者)에게만 電氣를 供給하는 事業을 特定電氣事業이라 指稱토록한 것이다.

4. 保安體制의 改編

電氣事業의 初期에는 電氣工作物의 設置工事와 維持管理는 電氣事業者만의 權利였고 또 그로부터 發生되는 모든 災害에 對하여도 當然히 그 責任을 電氣事業者가 負擔하는 體制였었다(現行電氣事業法第7條 第1項參照).

그以後 社會的인 與件은 많은 變遷이 있어 첫째 需要設備에 對하여는 各己 그 需用家가 設置하고 所有하게 되었으며, 또 法律上 電氣工作物의 設置等의 工事를 할 수 있는 者도 電氣事業者 外에 새로운 業種인 電氣工事業者가 追加되었다(電氣事業法 法律第280號參照).

한편 需用家의 設備規模도 점차 大型化 되고 電氣技術이 普及되어서 이제는 電氣設備의 保安을 爲하여 그 工作物의 設置等 工事權을 어느 特定人에게만 局限하거나 또 是 工事權의 反射的인 法律關係로서 災害의 責任을 어느 特定人에게만 局限하여 負擔케 해야 될 必要性이 自動的으로 消滅되어 버렸다.

따라서 모든 電氣工作物의 保安에 關한 權利와 責任은 各己 그 所有者의 私權과 一致 시켰으며 여기에 國家는 여러가지 새로운 制度로서 加一倍의 強力한 規制를 課하므로써 보다 效果的으로 保安이 確保되도록 體制를 改編하였다. (詳細

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따로記述하기로 한다)

5. 規制對象의 明確한 區分

認許可事項等 規制對象을 明確히 區分하여 附屬法令에 그 具體的인 事實을 明示하도록 하였다.

6. 山間僻地, 島嶼等地에서의 電氣事業

相當期間 一般電氣事業者의 電力系統이 들어갈 수 없는 閉鎖地域에서 小規模의 設備으로써 電氣事業을 營爲하는것을 抑制할 必要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認定하고 다만 電氣事業法을 全面的으로 適用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兪잡하기 때문에 電氣事業法의 規定中 必要不可

缺의 몇가지 事項만을 準用하도록 한것이다. 이 경우에 그 事業을 準用事業이라 呼稱하도록 하였으나 現行法上的 準用事業과는 그 內容이 전혀 다르다는것은 (1)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7. 罰則強化

法規定中 義務規定에 對하여는 모두 그 違反에 對한 制裁를 課하기 爲하여 罰則을 詳細히 規定하였다. 더우기 電線竊取를 비롯한 發送變配電用 電氣工作物의 損壞行爲에 對하여는 보다 무거운 處罰을 課하고, 無斷히 電氣設備를 操作하여 妨害하거나 그 反對로 當然히 操作하여야 되는 從業員이 故意로 正當한 操作을 忌避하여 發送變

配電이 妨害된경우에도 相當히 嚴한 處罰을 課하도록 한것이다.

8. 電氣用品 製造 規制는 別途의 法制定

從來 電氣事業法에 規定되어 있던 電氣用品 製造 規制 條項을 없애고 別途의 法을 制定토록 하였다. 다만 그 法이 制定될 때까지는 現行法 第16條와 그 條項에 基하여 制定된 大統領令(電氣用品 製造 免許等에 關한件, 1966. 1. 13 大統領令 第2378號) 및 商工部令(電氣用品 製造免許等에 關한件 施行規則 1966. 9. 30 商工部令 第171號) 現行法의 廢止에도 不拘하고 繼續하여 効力을 갖도록 하였다(附則參照).

<P 22에서 계속>

의 低電壓補償工事を 실시하였으며 電力損失率은 11%로 감소되었고 노동생산성은 전년비비 131%가 향상되었다고 보고 했다.

한편 이날의 총회는 維新總會답게 전혀없이 질서정연하고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는데 총회의 목적사항인 ① 72년도 영업보고서 내차매

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승인의 건 ② 이익금 처분안 승인의 건 ③ 정관 변경의 건 ④ 자산재평가 보고 및 자본전입의 건 ⑤ 임원보수의 건 ⑥ 임원선입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폐회에 앞서 民間株主 일동이 金相福韓電社

長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지난 한 해 동안 韓電이 이룩한 경영책진 실적을 높이 致賀했으며 10월유신의 숭고한 精神에 입각하여 韓電의 民間株主 一同도 유신대열의 선봉에 설것을 굳게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하여 이색적이 화제를 낳았다.